



ISA 활용 소액 채권투자, 비과세 혜택 '듬뿍'

Editor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연구원

■ 올해 3월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실물 채권투자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채권형 펀드나 채권 ETF로 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ISA에서 실제 채권을 직접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모든 ISA에서 채권매매 할 수 있나

모든 ISA계좌에서 채권 매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ISA는 운영형태에 따라 중개형·신탁형·일임형 ISA로 구분된다. ISA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중개형을 선택해야 한다. 채권투자와 같은 직접투자가 가능한 계좌는 중개형 ISA이기 때문이다. 중개형 ISA는 상장주식과 리츠, ETF, 공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한다. ISA에서의 채권투자는 일반위탁계좌에서 채권을 거래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채권을 매매할 수 있다.

중개형 ISA에 투자 가능한 채권 종류는?

ISA에서 투자 가능한 채권은 장내·장의 채권 등이며, 기존

기업어음(CP) 시장을 대체한 단기금융시장의 채권(단기사채) 등도 포함된다. 주로 국채, 지방채, 공공기관 채권,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 및 ABS(자산유동화증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외화 채권은 가능하지 않다. 제시되는 채권의 이자율은 채권의 만기와 신용도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채권은 거래 단위가 커서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ISA에서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은 거래 단위가 1000원인 경우도 많다. 소액 국공채가 대표적인 예이다.

ISA에서 채권 매매 시 유의할 점은?

첫째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하락할 경우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발행자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채권의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나 채권은 부도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해진 약정 이자는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현금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 둘째는 채권 만기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하는 채권 만기가 ISA 만기보다 긴 경우 ISA 만기일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일반과세 처리된다. 이 경우에는 ISA 만기일 전에 ISA 계약 만기를 연장해 세제혜택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물론 ISA 만기일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채권매매 시장 특성상 채권은 상장 주식과 달리 매수와 매도 호가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어 보유한 채권을 내재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때가 있다. 따라서 ISA에서 채권투자를 할 때는 ISA의 만기보다 짧은 만기를 가진 채권을 매수해 예금에 저축하듯이 만기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적합하다.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면 ISA 만기를 그만큼 길게 설정해 놓거나 ISA 만기를 지속해서 연장해 나가야 ISA의 세제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M**

ISA는?

ISA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최대 200만원(서민형 ISA 최대 40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ISA를 잘 활용하면, 이자·배당수익에 대한 절세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ISA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를 만들 수 없다.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의무가입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납입원금은 자유롭게 출금 가능하다. ISA 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해도 바로 해지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